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3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3

I. 제안경위

2025년 4월 30일 성일종위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나 이 시기에 그 배우자도 곁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에게도 이 시기 중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중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15일(다태아의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략)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⑥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 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9항-----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② (생 략)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③ ----- -----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
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
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
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
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
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 <단서 삭제>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4항-----

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 ⑦ (생략)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

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⑩ -----제9항-----

-.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⑫ 제9항-----

-----제11항-----

-----.

제110조(벌칙) -----

1. -----

-----제74

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6항 및 제7항-----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 한 자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 -----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 · 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u>제74조제6항</u> ,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1. ----- ----- ----- ----- --- <u>제74조제8항</u>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 조, 제48조, 제66조, <u>제74조제7</u> <u>항 · 제9항</u> , 제76조의3제2항 · 제 4항 · 제5항 · 제7항, 제91조, 제9 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 ----- <u>제74조제9</u> <u>항 · 제11항</u> -----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¹⁾ 유·사산한 여성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휴가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5일(다태아의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 여성 배우자가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은 여성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여성과 관련한 출산전후휴가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지원제도를

1)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마다 휴가 일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²⁾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 심사과정에서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아 보이고, 휴가기간은 공무원 제도(연간 3일)와의 형평성 및 사업주의 인력운영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39